

# 반부패 및 반뇌물 정책

2026. 05. 21. 제정

## 서 문

본 정책은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에서 정한 행동 기준을 보완하는 관리체계로서, 부패 리스크의 식별, 평가 및 통제에 관한 기준과 운영체계를 규정한다. 회사는 본 정책을 통해 부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며, 선물·접대, 정치 기부, 제3자를 통한 간접 뇌물 등 구체적인 금지행위 및 임직원의 행동 기준은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을 따른다. 또한 회사는 본 정책 및 관련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점검하고, 사업 환경 및 규제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OCI 홀딩스(이하 “회사”) 및 종속회사의 사업활동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및 뇌물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반부패 규정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회사 및 국내외 모든 종속회사에 적용되며, 임직원뿐만 아니라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제3자, 공급업체 및 주요 이해관계자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제3조 (기본 원칙)

회사는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또한 회사는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반부패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연 1회 이상) 및 내부통제를 수행한다.

### 제4조 (글로벌 기준 및 법규 준수)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동시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반부패 기준을 준거로 하여 정책을 수립·운영한다. 이를 위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EU 반부패 관련 기준 및 OECD 반부패 협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고려하며, 각 기준 간 요구 수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제5조 (부패 리스크 관리)**

회사는 사업 특성, 수행 국가, 거래 구조 및 이해관계자 유형을 고려하여 부패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 수준에 따라 리스크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기반하여 적절한 통제 및 관리 방안을 수립·운영한다. 또한 회사는 제3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실사를 포함한 사전 검토 및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계약을 통해 반부패 준수 의무를 부과하여 거래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제6조 (윤리·준법 프로그램)**

회사는 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부패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또한 내부 신고 채널을 통해 위반행위를 접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공정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책 이행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제7조 (거버넌스)**

PR/ESG팀은 본 정책의 수립 및 개정을 주관한다. 감사부는 본 정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패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며, 주요 사항을 경영진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경영진은 회사의 부패 리스크 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가진다. HR, 법무, 구매 등 유관 부서는 교육, 계약 검토, 제3자 실사 및 공급망 관리 등 각 기능별 역할에 따라 본 정책의 운영 및 이행에 참여한다. 회사는 지주회사로서 종속회사의 정책 이행 현황을 관리·감독하며, 그룹 차원의 반부패 및 반뇌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제8조 (신고 및 조치)**

회사는 부패 및 뇌물과 관련된 위반행위 발생 시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위반행위의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및 회사의 내부 절차에 따른다. 특히 임직원 윤리행동 준칙 제12조에 따라 피신고자 및 관련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사상 부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색출을 시도할 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신고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자를 보호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